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공 공 기 관 의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금년 2월3일 공표되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였는바, 동 개정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인 노동이사의 추천 및 동의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동이사제도의 도입(안 제21조 2항, 제21조 3항, 제22조 3항, 부칙)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선출절차를 위임함에 따라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가 2명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 위원회에 추천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내용으로 노동이사의 추천 및 동의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임명’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노동이사 규정의 적용시기

를 8.4일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으로 부칙을 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대표는 2명 이내의 임원추천후보자를 법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의 임원후보자를 선출하여 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기관의 근로자 100분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절차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을 말한다.	제21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 제5항 ----- ----- ----- ----- -----.
<신설>	②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대표는 2명 이내의 임원추천후보자를 법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③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의 임원후보자를 선출하여 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기관의 근로자 100분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법 제24조제3항 본문 및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제22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 --- ----- 제5항 ----- ----- ----- -----

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2. (생략)

②법 제24조제3항 본문, 법 제26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과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 7. (생략)

<신설>

-----.

1.·2. (현행과 같음)

②-----
----- 제5항 -----

-----.

1. ~ 7.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비상임이사
의 추천 및 동의절차는 제21조제2
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제22조제3
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임
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
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연 락 처	(044) 215 - 5581